

圖書館關係法研究委員會(案)

1. 제안이유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이상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의 참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시청각실 등을 갖추도록 함. (안 제 3조 및 별표 1)

나.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문화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도서관업무 관련국장과 도서관 및 출판에 관한 전문인사 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 10조)

다. 국내외 도서관간의 자료의 유통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국제교류, 각종 서지의 발간·배포,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의 시행, 국제기구의 가입 및 활동등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 18조)

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 자료의 선정, 교환 및 국제교류, 국민독서운동, 시범도서관의 운영, 지역문화사업의 전개 등을 지도·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20조)

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연령·직업·계층별 독서운동, 이동과 청소년의 독서지도, 장애인 및 취약지역 주민의 독서활동, 교육·문화시설과의 협조내용 등을 강구하도록 함. (안 제 21조)

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이 매5년마다 1회 이상 연수를 받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연수과정을 두고, 당해도서관의 장은 국립중앙

도서관 관장이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 22조)

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공립공공도서관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내 각종 문화시설과의 상호협력과 당해 도서관의 자료구성 방침, 독서운동 계획 수립등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 (안 제 26조 및 제 27조)

아. 공공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료, 복사료, 강습료 등으로 하되, 입관료를 제외시켜, 일반인의 이용을 자유롭게 함. (안 제 32조)

자. 문화부장관의 권한중 사립공공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 지원 업무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 (안 제 38조)

차. 도서관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을 1996년 1월 1일부터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함. (안 부칙 제 3조)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 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특수도서관의 이용자) 법 제 2조제 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의료시설, 군사시설, 교도소 등 특수환경에 처한 자를 말한다.

제 3조(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법 제 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4조(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 법 제 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 ①법 제 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 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시책) 문화부장관이 법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직원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서직원·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연수
2. 사서직 공무원의 직무교육(보수교육)
3. 사서교육과정의 개선
4. 사서직 인사제도의 개선

제7조(사서교사의 연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의 연수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 ②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외한다)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수입 장서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 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불용결정 또는 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폐기 또는 제적자료의 양여) ①각 도서관은 법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한 자료중 제 8조제 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활용을 위하여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자료를 지역별로 지정한 도서관(이하 "지정도서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지정도서관은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할 필요가 없는 자료는 폐기처분하거나 다른 도서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교육부·문화부·체신부·총무처·과학기술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인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
 3.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교수 기타 도서관 및 출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협력망의 체계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화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문화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도서관의 설립, 시설·자료 및 운영의 보조
2. 도서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의 보조
3.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4. 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5. 기타 도서관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②문화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체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문화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3월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서직원 및 사서교사의 자질향상 지원

제17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문화부장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그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②문화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 1항제 3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국내외 자료의 조사 및 수집
2.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국제교류
3. 국가서지, 납본속보, 종합목록 기타 필요한 서지의 발간·배포
4.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도의 수립·시행
5. 국내외 회귀자료의 복제와 배부
6. 국제도서관정책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제19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에 법 제16조제 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 교류 대상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 1항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자료의 선정·교환·이관·폐기·제작 및 대차

3. 국민독서운동의 지도·지원
4. 지역별·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도·지원
6. 자료의 국제교류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제21조(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 법 제16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직업·계층별 독서운동
2.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 활동
3. 장애인등을 위한 독서활동
4.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5. 문화시설·교육시설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제22조(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을 포함한 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한다.

- ②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한다.
-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사서직원이 매 5년마다 1회 이상 일반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제3항에 의한 연수는 도서관직원중 도서관 봉사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⑤국립중앙도서관장이 일반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서관의 장은 그 직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부령으로 정한다.
- ⑦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직원의 연수를 다른 도서관이나 연수기관,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공 및 납본자료등) ①법 제17조제1항, 제2항 및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지도
2. 슬라이드

3.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
 4. 마이크로 형태물 중 창작된 자료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 또는 유료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일부 납본 의무자를 위한 납본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납본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납본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국가서지 또는 추천자료서지에의 수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판사의 연혁, 출판실적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이하 ‘한국문현번호’라 한다)의 부여대상·절차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현번호운영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그 자료에 문헌번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25조(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①한국문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문헌번호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정부기관, 도서관계 및 출판계 인사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립공공도서관 단위로 설치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서관장과 봉사대상구역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 회의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법 제25조제 1항 및 법 제3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의 절차) ①문화부장관은 법 제25조제 3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지정일 7일전에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하 '처분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문화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그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에 처분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화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할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 법 제27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폐관신고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등 전자매체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제33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설립운영자의 보조신청) 법 제28조 및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공공도서관 또는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 또는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신청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문화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점자도서관 설립운영자의 보조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자도서관을 설립한 자가 시각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자도서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점자자료 및 녹음서의 제작
2. 점자자료 및 녹음서의 열람 및 대출
3. 점자교육의 지도
4. 기타 시청각장애자에 대한 지원

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자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자 또는 설립운영하고자 하는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보조를 신청할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5조(도서관협력망등의 조직)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한다)의 지역대표관이 지방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도서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협력망운영계획) ①중앙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대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직할

시 및 도의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협력망 상황을 연차별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역대표도서관과 협력망에 참가하는 각도서관은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운영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요구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등) 문화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진흥기금중 특 정도서관 또는 특정지역 도서관의 진흥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25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및 서류제출 요구
4. 법 제27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의 수리

5. 법 제3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
6. 당해 업무가 위임된 경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법령의 폐지) 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법 제24조제 1항의 시행일) 법규정 법 제24조제 1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부칙 제5조제①항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3에 불구하고 이영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영 시행 당시 정사서로서 별표 3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영에 의한 1급정사서로,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영에 의한 2급정사서로 보며, 이영 시행 당시 준사서로서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영에 의한 2급정사서로, 2급정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영에 의한 준사서

로 본다.

제 5조(사서직원의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이영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 4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부장관에게 해당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사서로서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준사서로서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려하지 아니하다.

③이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부칙 제5조제 3항에 의하여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동 규정에서 정한 시기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6조(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영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 7조(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 2에 의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별표 1〕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 기준(제 3조 관련)

I. 공공도서관

봉사대상기준인구 (인)	시 설		자 료	
	건 물 (제곱미터)	열 램 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가 (권)
2만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이상 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10만이상 3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30만이상 5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이상	4,950이상	1,200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 비고 : 가. 기준인구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해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 구 · 읍 · 면의 인구를 말한다.
- 나.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이상인 공립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 · 연속간행물실 · 시청각 실 · 회의실 ·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 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마.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외에 연속간행물을 봉사대상 1천인당 1종, 시청각자료를 봉사대상 1천인당 10종을 각각 갖추고, 기타 향토자료 · 전산화자료 · 행정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봉사대상기준인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2만인미만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하며, 자료기준은 자체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사. 어린이를 위한 자료는 전체 장서의 25% 이상으로 한다.

2.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학술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기교재 · 전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학교시설 · 설비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교수 · 학습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기교재 · 컴퓨터교육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사대상	시 설 및 자 료 기 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

5. 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사대상	시 설		자 료	
	건 물	기계 · 기구	장 서	녹음테이프
시 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99제곱미터 · 서고 : 면적의 25퍼센트 이상 · 인쇄실 : 면적의 35퍼센트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p>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권을 추가하여야 한다.</p> <p>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대, 점자인쇄기 1대, 점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여야 한다.</p>	1천500권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권을 추가하여야 한다.	500점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비고 : 가. 건물면적에는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등의 전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사서직원 ·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제 4조 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대학도서관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학교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학교에는 36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 겸임사서교사(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교사(사서) 중 1인을 두며, 35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2인 이상과 제판점자 지도, 인쇄, 정정, 대출열람등을 담당할 직원을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 5조 관련)

자 격	자 격 요 전
1급 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받은 후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화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받은 후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경과된 다음에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 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현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받은 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준사서 자격증을 받은 후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 경과된 다음에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받은 후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경과된 다음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